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2507호
- 나. 제 안 자 : 이상욱 의원(찬성자 18명)
- 다. 제 안 일 : 2025년 3월 28일
- 라. 회 부 일 : 2025년 4월 2일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중 하나인 현수막과 관련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하여 일반적인 표시방법으로 소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11조제1항제8호)
- 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기준에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에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안 제12조제2항제3호)

다. 시장이 수립하는 지원계획의 내용으로 광고물등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0조제1항제3호)

라. 시장 및 구청장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
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안 제30조제6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하고(안 제11조제1항제8호),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시 지정게시대 운영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12조제2항제3호), 지원계획에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안 제30조제1항제3호), 시장·구청장이 관련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0조제6항) 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u><신설></u> ② ~ ⑤ (생략)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소재는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 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 소재(이하 “친환경 소재”라 한다)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 기준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행	개정안
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일한 지정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u>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4. ~ 6. (생략) ③ (생략) 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② ~ ⑤ (생략) <u><신설></u>	-----. 1. 2. (현행과 같음) 3. ----- -----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 ----- ----- <u>가.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u> <u>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u> <u>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4.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 ----- --. 1. 2. (현행과 같음) <u>3. 광고물등의 친환경 소재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② ~ ⑤ (현행과 같음) <u>⑥ 시장은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거나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현수막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나. 검토 내용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안 제11조제1항제8호)

- 현행 조례 제11조는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제1항제8호를 신설하여 생분해성, 산화생분해성, 바이오 기반 기술,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이 적용된 자연 친화적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정의하고, 이를 현수막 제작 시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노력의무규정(~노력하여야 한다)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 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u><신설></u>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u>8. 소재는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 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 소재(이하 “친환경 소재”라 한다)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2제1항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물의 질적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향상과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²⁾은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1항제8호의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사용에 대한 권장 사항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보임

- “친환경 소재”는 현재 법률상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서 친환경 소재를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정의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노원구, 대구광역시 북구 등) 조례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음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의 “친환경 소재” 정의〉

자치단체 (제정일)	조례명	“친환경 소재”의 정의
경기도 (‘19.1.14.)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친환경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경상북도 (‘20.11.5.)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 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친환경소재”란 천연원료로 제조하여 생분해가 가능하거나, 바이오 기술을 적용하여 인체유해성 및 생태계 독성을 최소화한 소재로서 원료·생산·소비·폐기·재활용 과정에서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순환형 소재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23.10.11.)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친환경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폐자원 활용 재자원화 등 탄소 저감형 기술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3) 파주시를 비롯한 64개 기초·광역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서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음

자치단체 (제정일)	조례명	“친환경 소재”의 정의
파주시 ³⁾ (‘23.12.26.)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2조제2호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2조제2호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25.1.1.)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2조제2호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또한, “친환경”은 자원순환(재활용, 생분해 등), 에너지 효율(탄소 배출 저감), 유해물질 저감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고, 산업별·기술별로 적용되는 친환경의 기준이 상이하여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획일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 각 부처가 정책 목적에 따라 다양한 친환경 인증제도를 운용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로서는 법률 차원의 정의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친환경 소재”는 정부 부처의 다양한 친환경 인증제도와 다른

4) -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전 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바탕으로 제품의 **자원 소비 저감, 폐기물 감축, 생분해성 여부, 유해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산업통상자원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녹색기술 인증제도**를 통해 바이오 기반 고분자, 탄소 저감형 제조 기술 등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기술과 제품을 인증

- **조달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지정하며, **환경표지 인증 또는 탄소발자국 인증 제품**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공구매를 유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서 정의한 공통된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 타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의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이용 촉진을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안 제12조제2항제3호), 시장 및 구청장의 행정·재정적 지원(안 제30조제6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집행 및 예산 편성 시 명확한 기준 적용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신력 있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소재” 등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규칙 또는 운영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2) 지정게시대 친환경 현수막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안 제12조제2항제3호)

- 현행 조례 제12조제2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기준에 관한 것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의 게시기간을 1회 15일로 제한하고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동일 게시대에 2회 이상 연속하여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제2항제3호 각 목에서 현수막 게시기간 제한 및 2회 이상 연속 게시 제한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항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게시”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에 유효한 정책 수단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 기준 등) ① (생략)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일한 지정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u>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u><신설></u>	<u>가.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u>
<u><신설></u>	<u>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u>
<u><신설></u>	<u>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에 비해 제작 단가가 높고⁵⁾ 이를 생산·인쇄·유통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 주도의 자발적인 확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자치구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라 판단됨

5) - '광주 동구가 친환경 현수막 수거함을 설치한 까닭은?'(무등일보, 2024.08.29.)
현수막 제작 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있지만 대략 일회용 현수막은 4~5만원, 친환경 현수막은 7~8만원으로 동구는 일회용과 친환경의 가격 차이 3~4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 '파주시, '현수막 친환경소재 사용 보상제' 확대'(에코저널, 2024.09.06.)
파주시가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는 친환경 현수막 상용화를 위해 기존 원단과 친환경 원단의 가격 차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 기존 원단과 친환경 원단 가격 차이 지원 (1㎡=3,000원, 장당 12,000원)

- 다만, “친환경 소재” 사용 여부에 대한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거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규칙 또는 운영 지침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증빙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수막은 ‘2개월의 범위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로 게시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 조례에서도 법령에서 명시한 게시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연속 게시를 허용하더라도, 전체 게시기간은 법령에서 정한 최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제2항제3호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또는 운영지침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연속 게시기간 등을 명시함으로써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1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 >

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7. 현수막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막: 1년 이내 •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 <u>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2개월의 범위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u> • 그 밖의 현수막: 15일 이내

(3) 지원계획에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0조제1항제3호)

- 현행 조례 제30조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0조제1항제3호는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에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 관련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이용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u>3. 광고물등의 친환경 소재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 최근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폐기물 증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24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6)」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 따라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확대는 서울시의 중장기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옥외광고물 지원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충분한 정책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함

6)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24) - 「탄소중립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이 담긴 법정 계획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① 온실가스 총량 관리를 통한 건물 탈 탄소화
 ② 교통 수요관리 및 친환경차 확대
 ③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④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실천에 대한 시민 주도적 참여

- 그간 시는 옥외광고물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으나, 현행 조례 개정(2025.1.3.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책무가 신설(현행 조례 제30조제1항)되었음.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2에서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옥외광고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별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2차 옥외광고 종합계획(2026~ 2030)’의 수립을 앞둔 현시점에서 시도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시 지원계획 수립에 앞서 친환경 소재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시의 중장기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7(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장 및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30조제6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0조제6항은 구청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신설></u>	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 ----- --. <u>⑥ 시장은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거나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현수막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 현행 조례 제28조제6항⁷⁾에서 구청장이 ‘불법 유동광고물로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경우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제한적인 성격을 가지는 반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0조제6항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사용과 현수막의 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통합적·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7)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
 ① "유동광고물"이란 영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중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한다.
 ② 도로변 공공시설물을 소유 또는 설치·유지·관리하는 주체는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구청장은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실명제, 불법 유동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 유동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생략)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게시대 이용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구청장이 관련 시책 추진시 시장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수막의 제작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 확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현재 “친환경 소재”에 대한 법령상 통일된 기준이 없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포함한 자연 친화적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정의하였음.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및 정부 친환경 인증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요소들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 타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의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행규칙 또는 운영 지침 등을 통해 “공신력 있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소재”와 같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기준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은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실

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기대됨. 다만, 상위법령이 정한 게시기간의 범위(2개월)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규칙 또는 운영지침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연속 게시기간 등을 명시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또한, 시장이 수립해야 하는 ‘지원계획’에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순환 확대 등 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향후 수립될 옥외광고물 관련 지원계획의 주요 과제로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정책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현행 조례 제28조에서 ‘불법 유동광고물로 수거한 현수막’에 한하여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던 것과 비교해볼 때, 구청장이 추진하는 친환경 현수막의 제작부터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포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